

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남궁역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 외 27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유아동네숲터에는 자연물(통나무, 나무밑등, 나뭇가지 등)로 유아의 체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, 방수 등 가공되지 않은 자연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되어 장기간 유아이용시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.



00구 유아동네숲터의 노후된 나무움막



00구 유아동네숲터의 통나무 묶음

□ 어린이 놀이터의 놀이시설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과

정기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나, 유아동네숲터의 체험놀이시설은 설치기준이나 안전기준이 없으며, 단순 일상관리만 이루어지고 있어 이 체험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규정이 필요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.

-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유아숲 체험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장은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,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(안 제6제제 4항).
-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